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김민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57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7월 1일

발 의 자: 김민석, 김순옥, 신찬호, 고찬양
이종숙, 김현진, 김지수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라.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마. 청년 문화예술사업(안 제6조)
- 바.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- 사. 위탁(안 제8조)
- 아. 재정지원(안 제9조)
- 자. 실태조사 등(안 제10조)
- 차. 시행규칙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 제5조

나. 협조부서: 문화체육과

다. 입법예고: 2022. 7. 8. ~ 7. 13. 결과: 의견 있음(별첨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년 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라 한다)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,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」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
2. 청년 문화예술 발굴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3.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5.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청년 문화예술사업)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,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
2.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
3.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
4.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
5.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
6.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
7.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, 커뮤니티 조성 사업
8.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,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
9.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
10.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
11.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(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

하여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위탁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재정지원)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청년예술인 기획·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
2. 청년예술인 기획·창작·홍보 활동 재정지원
3. 청년예술인 기획·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
4.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
5.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
6.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
7.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
8.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
9.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제10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
2. “문화산업”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·제작·공연·전시·판매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

제5조(청년정책 시행계획) ① 구청장은 「청년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삭제(2021.5.6.)

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 강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